

**교육부** **보도자료** **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**

보도 일시	(인터넷) 2022. 3. 15.(화) 10:00 (지 번) 2022. 3. 15.(화) 10:00	배포 일시	2022. 3. 15.(화) 08:30
-------	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 <총괄>	학교혁신지원실 고교교육혁신과	책임자	과장 권지영 (044-203-6276)
		담당자	사무관 강현 (044-203-6894)

**교육부 소관 5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**

**주요 내용**

- 고교학점제 및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세부 규정 마련
-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항 규정
- 인권센터에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, 폐쇄회로텔레비전(CCTV) 등을 갖춘 공간을 두는 등 대학인권센터 설치·운영 기준 마련
-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생 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해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
-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명칭을 ‘양성평등교육심의회’로 변경

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3월 15일(화),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5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·의결했다고 밝혔다.

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5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**[ 1.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]**

- 고교학점제 시행 및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·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초·중등교육법」이 개정(2021.9.24. 공포, 2022.3.25. 시행) 되면서 그 세부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,
- 고교학점제 운영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 인정 기준 등을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,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설치·운영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업무와 위탁기관 등을 정하였다.

- 또한,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개정(2021.9.24. 공포, 2022.3.1. 시행)에 맞추어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정비하여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,
- 현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입학 여부 등을 허가하고 있는 외국인학생 및 다문화학생의 고등학교 입학·전학·편입학 제도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입학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.

☞ 【붙임2】 1 참고

**[ 2.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 ]**

- 이번 시행령 개정은 「사립학교법」 개정(2021.9.24. 공포, 2022.3.25. 시행)에 따른 후속 조치로,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.
- 「사립학교법」에서 초·중등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 실시하도록 하였는데, ① 필기시험 외에 다른 방법의 시험으로 대체할 필요\*가 있거나, ② 교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, ③ 공립 임용 시험에서 선발하지 않는 교과목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를 예외사항으로 정하였다.

\* (예시) (예체능 교과) 실기시험으로 대체, (전문교과)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대체 등

-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학교 규모에 따라 확대하고, 징계의결의 재심의를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설치하는 징계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징계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였다.
- 사학기관 행동강령에 포함되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의 범위를 사학기관 종사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,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으로 정하였다.
- 학교법인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학교의 인터넷 누리집 등에 소집 일자, 장소 등을 공지하도록 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이사회 운영을 도모한다.

☞ 【붙임2】 2 참고

### [ 3.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]

○ 올해 3월 24일부터 대학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, 학생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**인권센터운영위원회**를 설치하고, 인권센터에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, 비상벨 등의 장치가 설치된 **조사 및 상담공간**을 두도록 하였다.

○ 교육부는 올해 1학기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**대학인권센터 설치·운영 기준**에 대해 안내하고, 인권센터가 대학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**선도 모형(모델)**을 개발해 확산하는 **시범사업\***도 3월부터 추진한다.

\* 인권센터 운영 선도,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, 인권네트워크 구축·활용 등 선도 모형(모델) 개발·확산 대학에 사업비 지원(7개교/교당 7천만 원 내외)

☞ **【붙임2】 3 참고**

### [ 4.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]

○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「**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**」이 개정(2021.9.24. 공포, 2022.3.25. 시행)되어 그 세부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,

○ 요양 중 간병료의 지급에 관한 기준 및 청구절차 등을 마련하고, 간병에 소요되는 **부대경비의 지급요건 및 지원금액** 등을 규정하였다.

※ (요양 중 간병료 지급기준)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요양 중인 상태로,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

○ 이번 개정으로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학생과 학부모가 학업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두터운 학교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☞ **【붙임2】 4 참고**

### [ 5.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]

○ ‘**남녀평등교육심의회**’ 명칭을 ‘**양성평등교육심의회**’로 변경하며, 관련 조문의 용어 중 ‘**남녀평등**’을 ‘**양성평등**’으로 변경한다.

○ 심의회 심의사항에 ‘**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양성평등교육**’ 방안에 관한 사항과 ‘**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**’ 방안에 관한 사항’을 추가한다.

☞ **【붙임2】 5 참고**

**【붙임】** 1. 3.15. 국무회의 통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 
2.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세부내용

<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>	학교혁신지원실 고교교육혁신과	책임자	과 장 권지영 (044-203-6276)
		담당자	사무관 강 현 (044-203-6894)
	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기획팀	책임자	과 장 박진하 (044-203-7080)
		담당자	사무관 김경화 (044-203-7083)
<사립학교법 시행령>	학생지원국 교육기회보장과	책임자	과 장 고영훈 (044-203-6746)
		담당자	사무관 김민지 (044-203-6987)
<사립학교법 시행령>	학교혁신지원실 교원양성연수과	책임자	과 장 채홍준 (044-203-6369)
		담당자	서기관 최지웅 (044-203-6467)
	학교혁신지원실 학교정책과	책임자	과 장 강전훈 (044-203-6506)
		담당자	사무관 박민지 (044-203-6441)
	학교혁신지원실 교원정책과	책임자	과 장 윤소영 (044-203-6688)
		담당자	사무관 윤현아 (044-203-6940)
<고등교육법 시행령>	고등교육정책실 대학교원지원팀	책임자	과 장 정봉출 (044-203-6665)
		담당자	사무관 김병철 (044-203-6927)
<고등교육법 시행령>	고등교육정책실 사립학교정책과	책임자	과 장 박준성 (044-203-6912)
		담당자	사무관 장혜은 (044-203-7092)
<고등교육법 시행령>	대학학술정책관실 대학학사제도과	책임자	과 장 김태경 (044-203-6249)
		담당자	사무관 이운식 (044-203-6255)
<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>	교육안전정보국 학교안전총괄과	책임자	과 장 정윤경 (044-203-6353)
		담당자	사무관 나세정 (044-203-6295)
<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>	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	책임자	과 장 장인자 (044-203-7112)
		담당자	사무관 강예일 (044-203-7115)

**붙임 1**

**3.15. 국무회의 통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**

순	법률안	주요내용
1	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고교학점제 운영과 교과목 이수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,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설치·운영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업무 및 위탁 기관 등을 규정</li> <li>·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사항을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</li> <li>· 다문화학생 및 외국인학생은 학칙이 아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·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규정</li> </ul>
2	사립학교법 시행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교육감 위탁 실시에 대한 예외 규정 마련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필기시험 예외) 다른 방법의 시험으로 대체할 필요성 인정</li> <li>- (교육감위탁 예외) ①교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거나, ②공립 임용시험에서 선발하지 않는 교과목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</li> </ul> </li> <li>·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학교규모에 따라 확대하고, 시도 교육청에 설치하는 징계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사항 규정</li> <li>· 사학기관 중사자 행동강령의 사적이해관계 신고 대상의 범위 규정</li> <li>· 이사회 소집 시 회의 7일 전까지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, 장소 등을 공지하도록 함</li> </ul>
3	고등교육법 시행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인권센터의 인력 및 시설기준 마련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성희롱·성폭력 대응 업무 담당자와 인권침해 행위 처리 담당자를 각각 둔, 인권센터 내 CCTV, 비상벨 등의 장치가 설치된 조사 및 상담공간 갖춤</li> </ul> </li> <li>· 인권센터운영위원회 설치 등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직원, 학생 및 전문가 등으로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, 성별 및 학생 위원의 비율 등 위원 구성의 조건 구체화</li> </ul> </li> </ul>
4	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개정(21.9.24.)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“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급 기준”을 구체적으로 규정</li> <li>· 요양 중 간병료 지원 가능 요건을 마련하고, 간병료 지급기준을 교육부령으로 위임하여 신체부위 및 기능의 손상 정도에 따라 규정</li> <li>· 학부모 직접 간병 시 부대경비 지급액 및 청구절차 등을 마련</li> </ul>
5	남녀평등교육 심의회 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‘남녀평등교육심의회’ 명칭을 ‘양성평등교육심의회’로 변경하며, 관련 조문의 용어 중 ‘남녀평등’을 ‘양성평등’으로 변경</li> <li>· 심의회 심의사항에 ‘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양성평등교육 방안’에 관한 사항과 ‘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·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’에 관한 사항 추가</li> </ul>

**붙임 2**

**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세부내용**

**1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(일부개정)**

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을 통해 고교학점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, 다문화학생의 고등학교 입학·전학·편입학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다.



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(고교학점제 운영 등) 고교학점제 운영과 교과목 이수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(제92조의3 신설)
- (고교학점제 지원센터)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업무와 위탁기관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다.(제92조의4 신설)
- (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) 수업일수, 휴업일, 학생의 안전대책 등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사항을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다.(제45조, 제47조, 제57조의2, 제63조, 제106조의4)
- (다문화학생 등의 입학·전학·편입학) 다문화학생 및 외국인학생은 학칙이 아닌 교육감이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·전학·편입학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.(제89조의2 개정)

동 개정으로 인해

- 개별학교의 특성에 맞춰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
-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, 공정성 향상과 함께, 다문화학생의 고등학교 편입학 거부 사례 발생 등을 해소하여 다문화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 공공누리		담당 부서	담당자 연락처 (☎044-203+내선번호)
		고교교육혁신과	과장 권지영(6276), 강현 사무관(6894)
		기획팀	과장 박진하(7080), 김경화 사무관(7083)
		교육기회보장과	과장 고영훈(6746), 김민지 사무관(6987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5조(수업일수) ① (생 략)  ②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<u>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.</u>	제45조(수업일수) ① (현행과 같음)  ② ----- ----- ----- ----- 심의를 ----- -----.
제47조(휴업일 등) ①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<u>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</u> 정하되, 토요일,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·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.  ②학교의 장은 <u>비상재해</u>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<u>임시휴업</u> 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<u>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</u> 하여야 한다.  <신 설>	제47조(휴업일 등)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----- ----- ----- 심의를 <u>거</u> <u>쳐 정하며</u> ----- -----.  ②----- <u>비상재해나 그 밖의</u> ----- ----- <후단 삭제>  ③ <u>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</u> 해야 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·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학생,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,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<u>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.</u>  ④ (생 략) 제57조의2(학생의 안전대책 등) 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,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<u>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.</u>  제59조의4(의견 수립 등) ① 국·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,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<u>수렴</u> 하여야 한다.  1. 법 제32조제1호, 제5호, 제6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심의를 ----- -----.  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 제57조의2(학생의 안전대책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<u>심의</u> 를 ----- -----.  제59조의4(의견 수립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수렴</u> 해야 ----- -----.  1. 법 제32조제1항제1호-----
--	---

호,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

2. (생략)

② 국·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1. 법 제32조제1호, 제6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

2. (생략)

③ (생략)

제60조(심의결과의 시행 등) ① (생략)

② 국·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·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63조(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)

-----  
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1. 법 제32조제1항제1호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60조(심의결과의 시행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천재·지변, 그 밖의 -----

----- 법 제32조제1항  
각 호-----

----- 않고 -----  
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제63조(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)

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(이하 이 조에서 “사립학교”라 한다)에 두는 운영위원회(이하 “사립학교 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는 당해 학교의 교원위원·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·선출 등에 관하여는 제58조, 제59조 및 제60조제2항·제3항을 준용하되,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5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추천)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“국·공립학교”는 “사립학교”로, “심의”는 “자문”으로, “학칙” 및 “시·도의 조례”는 “정관”으로 본다.

③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

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----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운영위원회(이하 “사립학교 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는 해당 -----

②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----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----- “심의 또는 자문”-----

-----

③ 사립학교의 장은 사립학교운

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.

④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·의결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·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⑤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89조의2(귀국학생 등의 입학·

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.

④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1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하여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

2.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영 및 사용에 관한 심의·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않거나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

3. 제60조제2항의 사유 없이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고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

⑤사립학교운영위원회-----  
-----  
않은 -----  
--.

제89조의2(귀국학생 등의 입학·

전학 및 편입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 따른 입학·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같음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·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.

1.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아동 또는 학생
2. 그 밖에 고등학교에 입학·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 따른 입학·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

<신 설>

<신 설>

전학 및 편입학) ① -----  
-----  
학생은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-----  
-----  
-----.

1.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-----
2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학생(다문화학생은 제외한다)

② 제19조제1항제4호의 아동 또는 학생과 다문화학생은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·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.

제92조의3(학점제의 운영 등)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고교학점

<신 설>

제(이하 “고교학점제”라 한다)의 운영,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과 학점 수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.

제92조의4(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)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고교학점제 관련 정책을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
2.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
3. 고교학점제 관련 연수자료의 연구·개발과 교원 연수의 지원
4. 그 밖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

②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관찰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
2. 관찰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
3. 그 밖에 관찰 고등학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

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과정평가원,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및 한국교육개발원
2. 그 밖에 교육정책의 연구 및 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법인이나 기관

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부장관이

	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, 교육감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
제106조의4(규제의 재검토)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106조의4(규제의 재검토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해야 -----.
1. 삭제	2. ----- ----- 심의 또는 자문 결과----- ----- 않는 -----
2. 제63조에 따른 사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, 학교의 장의 운영위원회 자문결과에 대한 존중 의무 및 학교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한 시정명령: 2016년 1월 1일	3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3. (생략)	
② (생략)	
대통령령 제30494호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대통령령 제30494호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제106조의4(규제의 재검토) ① 교육부장관은 제63조에 따른 사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, 학교의 장의 운영위원회 자문결과에 대한 존중 의무 및 학교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	제106조의4(규제의 재검토) ① ----- ----- 심 의 또는 자문 결과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

## 2 사립학교법 시행령(일부개정)

□ 「사립학교법」 개정('21.9.24 공포, '22.3.25 시행) 시 세부 시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.

□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하였는데, 시·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거나, 위탁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다.

- (필기시험 예외 기준) 채용과목의 특성, 평가 방법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방법의 시험으로 대체\*할 필요성이 있거나, (제21조 제7항 신설)

\* (예시) (예체능 교과) 실기시험으로 대체, (전문교과)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대체 등

- (교육감 위탁 예외 기준) ① 교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, ② 공립 임용시험에서 선발하지 않는 교과목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예외 기준으로 정하였다. (제21조제8항 신설)

○ (징계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등)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학교 규모\*에 따라 확대하고, 징계의결 재심의를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설치하는 징계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. (제24조의9 신설 등)

\* 학생수 200명 미만은 5명 이상 9명 이하로, 200명 이상은 9명 이상 11명 이하로 정함

○ (사적이해관계 신고 대상) 사학기관 행동강령에 포함되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의 범위를 사학기관 종사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,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으로 정하였다. (제28조의2 신설)

○ (이사회 소집 공지) 이사회 소집 시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,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. (제8조제1항 신설)

## □ 동 개정으로 인해

○ 「사립학교법」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개정 법률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하며, 이를 통해 사학의 자율적 운영 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담당자 연락처 (☎044-203+내선번호)
교원양성연수과	과장 채홍준(6369), 최지웅 서기관(6467)
학교정책과	과장 강전훈(6506), 박민지 사무관(6441)
교원정책과	과장 윤소영(6688), 윤현아 사무관(6940)
대학교원지원팀	과장 정봉출(6665), 김병철 사무관(6927)
사립대학정책과	과장 박준성(6912), 장혜은 사무관(7092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이사회의 소집승인신청) <신설>  (생략) 제14조의5(기금운용심의회 의 구성) ① ~ ③ (생략) ④ 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1. ~ 6. (생략) ⑤·⑥ (생략) 제21조(교사의 신규채용) ① ~ ⑤ (생략) <신설>	제8조(이사회의 소집) ① 이사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학교법인이 설치·경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, 장소 등을 공지해야 한다. ②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제14조의5(기금운용심의회 의 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법 제32조의3제2항제2호의 ----- ----- ----- 1. ~ 6. (현행과 같음) ⑤·⑥ (현행과 같음) 제21조(교사의 신규채용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3조의2제11항 본문에 따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가 필기시험을 시·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필기시험의 시기,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·도

<신설>

<신설>

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.

⑦ 법 제53조의2제11항 단서에 따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공개전형 을 실시할 때 채용과목의 특성, 평가 방법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을 다른 방법의 시험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·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공개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 하지 않을 수 있다.

⑧ 법 제53조의2제11항 단서에 따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·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필기시험의 실시를 시·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가 교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 제35조제5항 또는 제43조제1항 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 는 경우
2.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가 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 제11 조에 따른 공개전형의 필기시험

제24조의7(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)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별로 설치하되,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따로 설치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

제24조의7(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등) ① ----- 교원징계위원회(이하 “교원징계위원회”라 한다)-----

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규모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.

1. 학생 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:  
5명 이상 9명 이하
2. 학생 수가 200명 이상인 학교:  
9명 이상 11명 이하

제24조의9(징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) ①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(이하 “징계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, 징계의결의 기한 및 징계심의위원회 위원의 기피 등에 관하여는 제24조의8, 제24조의10 및 제24조의11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교원징계위원회”는 “징계심의위원회”로

제24조의9(징계의결의 기한)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[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(性)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]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.

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법 제66조의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.

제24조의10 (생 략)

제25조(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)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법 제6

본다.  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징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

제24조의10(징계의결의 기한) ① -----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받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을 요구받았을 -----  
----- 한 번만 -----.

②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의 재심의가 ----- 제1항에 따른 ----- 기간 -----.

제24조의11 (현행 제24조의10과 같음)

제25조(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 등) ----- 법 제64조

4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

1. ~ 7. (생략)

제25조의4(징계의 감경기준)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.

② (생략)

③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,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를 -----

- 징계의결 요구서 또는 징계의결 재심의 요구서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제25조의4(징계의 감경기준) ① -----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가 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를 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26조(징계의결서의 작성요령)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의 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, 증거의 판단과 적용법령을 명시해야 한다.

<신설>

제26조(징계의결서의 작성요령) 법 제66조제2항 또는 제66조의2제4항-----

제28조의2(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대상) 법 제72조의5제2항제3호에 따라 사립학교경영자,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(이하 “사학기관종사자”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. 다만, 사학기관종사자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사학기관종사자 자신이 법 제72조의5제2항제1호 각 목의 직무관련자(이하 “직무관련자”라 한다)인 경우

2. 사학기관종사자의 4촌 이내의 친족(「민법」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이 직무관련자인 경우

3. 사학기관종사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·단체가 직

- 무관련자인 경우
4. 사학기관종사자 자신 또는 그 가족(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·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
5. 사학기관종사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·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·고문·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·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
6. 사학기관종사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·지분,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·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
7. 그 밖에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

제28조의2 (생략)

제28조의3(규제의 재검토)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

제28조의3 (현행 제28조의2와 같음)

제28조의4(규제의 재검토) -----

-----  
-----

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1.·2. (생략)

<신설>

- -----  
-----  
----- 해야 -----.
1. 제7조의2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·선임 등: 2022년 1월 1일
  2. 제9조의2에 따른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: 2022년 1월 1일
  3. 제9조의4에 따른 교육경험의 범위: 2022년 1월 1일
  - 4.·5.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)
  6. 제21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실시의 예외 및 시·도교육감 위탁 실시의 예외: 2022년 3월 25일

3 고등교육법 시행령(일부개정)

□ 대학에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「고등교육법」이 개정(’21.3.23. 공포, ’22.3.24. 시행)됨에 따라, **인권센터 설치·운영 기준**을 마련하였다.

□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(센터의 독립성 보장) 인권센터를 설치·운영할 때에는 업무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함(제9조의3제1항 신설)
- (센터 인력 및 시설기준) 성희롱·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둘(제9조의3제2항제1호 신설)
  - 상담 및 조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, 비상벨 등의 장치가 설치된 공간을 갖추(제9조의3제2항제2호 신설)
- (센터장의 자격) 인권센터장의 자격을 부교수 이상의 교원,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함(제9조의3제3항 신설)
- (센터운영위원회 설치 등)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센터운영위원회 둘(제9조의3제4항 신설)
  - 인권센터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교직원, 학생 및 인권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(제9조의3제5항 신설)
  -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, 학생 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하되,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함(제9조의3제6항, 7항 신설)

□ 동 개정으로 인해

- 그동안 인권센터 부재로 학내 인권 문제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었는데, 앞으로 **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**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담당자 연락처(☎044-2031내선번호)
대학학사제도과	과장 김태경(6249), 이운식 서기관(6255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제9조의3(인권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① 학교는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(이하 “인권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때에는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.</p> <p>②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.</p> <p>1. 성희롱·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둘 것</p> <p>2. 인권센터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, 폭행 등으로부터 상담 및 조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, 비상벨 등의 장치가 설치된 공간을 갖추 것</p> <p>③ 인권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</p>

1. 인권센터가 설치된 학교에 두는 교원으로서 법 제14조제

2항에 따른 부교수 이상의 교원

2.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협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

④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센터에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.

⑤ 제4항에 따른 인권센터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교직원

2. 학생

3.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협이 풍부한 전문가

⑥ 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(이하 이 조에서 "위촉위원"이라 한다)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⑦ 위촉위원 중 학생 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하되,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.

####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(일부개정)

☐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을 통해 중증 상해 발생으로 요양 중 간병 필요 시 간병료 및 부대경비를 지급하는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였다.

☐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(요양 중 간병료 지급기준)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간병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, 간병료 지급기준과 지원금액 등 관련 세부사항을 교육부령으로 규정하였다.(제18조의2 제1항 및 제3항 신설)



○ (부대경비 지원) 사고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간병하는 경우 부대경비를 추가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.(제18조의2 제4항 신설)

\* 학부모 등 보호자(친권자·후견인)가 피해학생을 직접 간병하는 경우에 한하여 1일당 2만원을 정액 지급

☐ 동 개정으로 인해

○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폭 넓게 지원하고, 사고학생 가족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 	담당 부서 학교안전총괄과	담당자 연락처 (☎044-203+내선번호) 과장 정윤경(6353), 나세정 사무관(6295)
---	------------------	--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) 법 제34조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(이하 “요양급여”라 한다)의 항목별 지급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5. (생 략) 6. 인공팔다리·틀니·안경·보청기 등 장애인보조기구는 처방 및 구입의 경우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거나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1조제3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. 7.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진료비 등 그 밖의 지급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  <신 설>    <신 설>	제14조(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) ① 법 제34조제1호의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인공팔다리·틀니·안경·보청기 등 「장애인복지법」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 및 구입 비용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1조제3항에 따른 보조기구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. 7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1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 및 구입 비용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급여의 범위 및 지급기준 등 요양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 제18조의2(간병료의 지급기준 등)

① 법 제3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간병료(이하 “간병료”라 한다)는 피공제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한다.

1.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요양(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) 중에 간병을 받은 경우일 것
2. 부상 또는 질병 상태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

② 간병료는 피공제자가 실제로 간병받은 날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.

③ 간병료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간병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④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“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”는 피공제자의 친권자·후견인이나 그 밖에 피공제자를 부양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한 날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며, 그 지급기준은



제19조의2(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) ① 공제회는 법 제35조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,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,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공제회는 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해급여,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실상계 대상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④ 제2조제4호 중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3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공제회는 그 보험급여 상당액을 제외한 공제급여를 지급한다.

<신 설>

1일당 2만원으로 한다.

<삭 제>

제20조의3(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) ① 공제회는 법 제43조제2

항에 따라 공제급여에서 제외되는 치료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의 진단·소견이나 법원 등의 부검결과를 고려해야 한다.

② 공제회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장해급여,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 피공제자의 과실을 상계하는 경우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은 각 급여의 산정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당시 피공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공제급여와 상계하지 않는다.

1. 피공제자가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의 학생인 경우
2. 피공제자가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초등학교(초등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)의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
3. 피공제자의 심신상실 또는

<신 설>

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
제33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교육부장관, 교육감, 학교장,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10조의3에 따른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
2.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과 구상권 행사
3.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
4.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
5. 법 제41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

6. 법 제43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제한
7. 법 제46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
8.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전
9.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접수
10. 법 제59조에 따른 심리·결정
11.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접수
12. 법 제63조에 따른 심리·재결
13. 법 제67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 및 제공

5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(일부개정)

□ 「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」 일부개정을 통해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명칭 및 법령명, 관련 용어를 변경하여 개정된 상위법과 연관된 용어 체계를 정비하였다.

□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(심의회 명칭) 개정 「교육기본법」 제17조의2제4항\*에 의거 ‘남녀평등교육심의회’의 명칭을 ‘양성평등교육심의회’로 변경하고, (법령명, 제1조, 제2조)

\* 「교육기본법」 제17조의2(양성평등의식의 증진) ④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교육심의회를 둔다.

○ (관련 용어) 조문 내 용어, ‘남녀평등’을 ‘양성평등’으로 변경하고, (제3조, 제8조)

○ (심의회 기능) 심의사항에 “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양성평등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”과 “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·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에 관한 사항”을 추가한다. (제2조, 제6조의2)

□ 동 개정으로 인해

○ 남녀평등교육심의회(양성평등교육심의회)의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체계적·적극적 자문 활동과 안정적인 심의회 운영이 기대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</u>	<u>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</u>
제1조(목적) 이 영은 <u>교육기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기능, 위원의 자격·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</u>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교육기본법</u> 」 제17조의2에 따른 <u>양성평등교육심의회</u> ----- ----- <u>필요한</u> -----.
제2조(기능) <u>남녀평등교육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</u>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	제2조(기능) <u>양성평등교육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</u>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<u>남녀평등교육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</u>	1. <u>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</u>
2. <u>남녀평등교육증진을 위한 교육과정·교수방법·교육내용에 관한 사항</u>	2. <u>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·교수방법·교육내용에 관한 사항</u>
3. <u>교원의 남녀평등교육의식 활성화에 관한 사항</u>	3. <u>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</u>
4. <u>체육·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에 관한 사항</u>	4. <u>교원의 양성평등교육의식 활성화에 관한 사항</u>
5. <u>진로·직업 관련 남녀평등의식 고취 및 남녀평등 고용 활성화를</u>	5. <u>체육·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 방안에 관한</u>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담당자 연락처(☎044-203+내선번호)
양성평등정책담당관	과장 장인자(7112), 강예일 사무관(7115)

<p>위한 교육적 방안에 관한 사항</p> <p>5의2. 학교교육 분야의 성희롱·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교육정책 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</p> <p>5의3. 학교교육 분야의 성희롱·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</p> <p>6.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</p>	<p>사항</p> <p>6. 진로·직업 관련 양성평등의식 고취 및 양성평등 고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</p> <p>7.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·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에 관한 사항</p> <p>8. 학교교육 분야의 성희롱·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교육정책 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</p> <p>9. 학교교육 분야의 성희롱·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</p> <p>10. 그 밖에 양성평등의식 증진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</p>
<p>제3조(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</p> <p>1. 남녀평등과 여성문제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교육기관·연구기관·학계에 종사하는 사람 및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</p>	<p>제3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1. 양성평등-----</p> <p>-----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-----</p>

<p>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</p> <p>2. (생략)</p> <p>제6조의2(분과위원회) ①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(이하 “분과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 양성평등 교육정책 분과위원회: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 사항의 사전 검토 및 조정</p> <p>2.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·성폭력 근절 및 예방 분과위원회: 제2조제5호의2 및 제5호의3에 따른 심의 사항의 사전 검토 및 조정</p> <p>② ~ ⑥ (생략)</p> <p>제8조(간사등)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교육부에서 남녀평등교육을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.</p>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의2(분과위원회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----- 제7호-----</p> <p>-----</p> <p>2. ----- 제2조제8호 및 제9호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간사) -----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----- 양성평등교육-----</p> <p>-----</p>
---	---